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96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태영호

구자근 • 양금희 • 정희용

김예지 • 한기호 • 권영세

김성원 · 강대식 · 이주환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매출 또한 급감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

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표의 제1호나목란 중 "109분의9"를 "11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
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	액 공제특례) ①
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	
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	
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	
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	
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	
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	
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	
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율
	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 영자	102분의 2
1 . 음 식 점 업	나. 가목 외의 음식 점을 경영하는 사 업자 중 개인사업 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9)
	다. 가목 및 나목 외 의 사업자	106분의 6
2 · 제 조 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 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 업을 경영하는 사 업자 중 「조세특 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 및 개인사 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 의 사업자	102분의 2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2	• ③	(생	략)
(2)	• (3)	(생	닥)

	구분	율
1	가	
	나 	
		 110분의 10
	다	
2	가	
	나	
	다	
3		

②・③ (현행과 같음)